



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



건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, 비상구 등 피난·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법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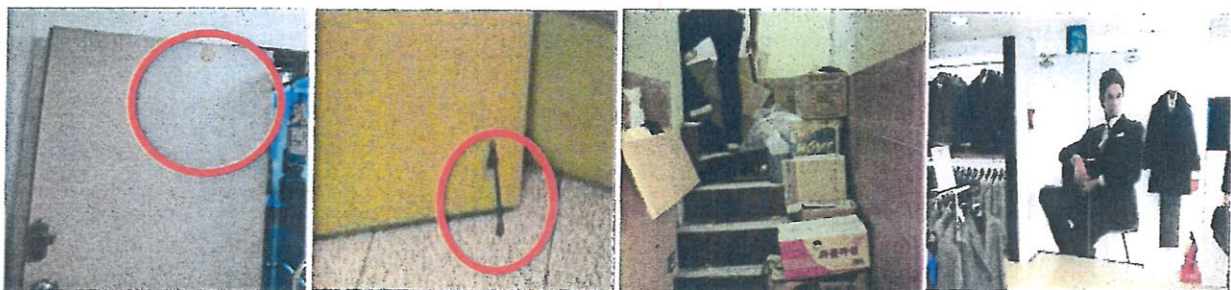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-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

□ 대상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

대 상	위 반 행 위	과태료 부과금액
소 방 대상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○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○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○ 그 밖에 피난시설·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	50 ~ 300만원
다 중 이용업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상구를 폐쇄·훼손·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○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에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놓는 경우 ○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·훼손·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	

- ※ 피난·방화시설 등의 범위 : 계단(직통계단·피난계단·옥외피난계단), 복도, 출입구(비상구포함), 옥상광장, 기타 피난시설, 피난통로, 방화구획(방화문 포함) 등
- ※ 폐쇄: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잠그거나 용접 등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행위
- ※ 훼손: 제거하거나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
- ※ 특히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에서 비상구 출입문에 래핑광고 부착은 비상구 인식장애가 되는 훼손 행위에 해당되어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□ 위반사항(예시)



도어체크 탈락(미설치)
말발굽 설치
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
래핑광고 부착

□ 기타 문의사항

- 성동소방서 예방과 ☎ 02-2622-1674, 02-2622-1675 FAX 02-2622-1679

성 동 소 방 서 장